24. 12. 16. 오후 2:34 인쇄

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

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

대상

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

병역처분

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시근로역으로 편입(현역병, 보충역, 예비군복무 면제) ※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대체역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(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 대체복무 면제)

출원시기

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

구비서류

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 **바로가기**

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,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

출원기관

지방병무청(지청)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「병무민원포털-병역판정검사-전시근로역편입원 신청」 <u>바로가기</u>

참고사항

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원입영가능